

순천대학교 감염병관리규정

제정 2020. 2.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교육 및 연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순천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과 소속 교직원 및 학생, 기타 학교시설 이용자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사람에게 침입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특정 병원체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
2.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란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 감염병 확진을 받았거나 의심환자로 진단받은 사람과 감염병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여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유행이란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 감염병이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방역물품이란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발열감시, 전파차단 조치, 격리 및 평상시 손씻기 실천, 학교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의미한다.

제4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대학본부의 주요 보직자인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학생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염병 관리 규정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

3. 감염병 총괄관리자 추천
4. 방역물품 공급 및 방역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위기대응계획의 검토
6.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7.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① 총장은 대학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관리 조직은 감염병 총괄관리자, 예방관리 및 발생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관리 및 발생관리팀은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업무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평상시의 예방활동, 감염병 발생시의 대응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 등 외부기관에서 역학조사 시 협조한다.

④ 학사관리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학사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지원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9조(감염병 총괄관리자)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과 감염병 위기 발생시 총괄지휘를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감염병 총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 담당
2.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체계의 구축
3. 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및 관리

제10조(모니터링요원) ① 대학 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요원은 교수, 각 학과의 조교,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링요원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나 교직원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예방관리 및 발생관리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학보건실) 대학보건실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감염병 발생 감시
2. 학생 및 교직원용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3.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상담
4. 예방접종 실시(감염병 유행 차단 조치로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 관리
6.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
7.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예방접종)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실시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숙사 입소 학생은 입사 등록시 건강진단서(B형간염, 결핵 검사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외 전입 학생들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방역) ①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시 임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2020.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